지배구조내부규범

제 1 편 총 칙

- 제 1 조(목적) 이 규범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융사지배구조법"이라 한다)에 따라 KB금융지주(이하 "지주회사"라 한다)가 주주와 투자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주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,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임원의 전문성 요건,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정의)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그룹"이라 함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(이하 "계열사"라 한다)으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체를 말한다.
 - 2. "지주회사"라 함은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금융지주사인 주식회사 KB 금융지주를 말한다.
 - 3. "임원"이란 이사,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.
 - 4. "이사"란 사내이사,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(이하 "비상임이사"라 한다)를 말한다.
 - 5. "사외이사"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.
 - 6. "업무집행책임자"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·회장·부회장·사장·부사장·전무·상무·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주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7. "최고경영자"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.
 - 8. "회장"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을 말한다.
 - 9. "경영진"이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.
- 제 3 조(공시) ① 지주회사는 이 규범을 제정 ·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
 - ② 지주회사는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등을 운영한 현황과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보고서(이하 "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"라고 한다)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 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.
 -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(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,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,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.
 - 1. 사외이사후보 추천 절차 개요
 -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

- 3.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(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)
- 4. 사외이사 후보자와 지주회사(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),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
- 5.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
- 6.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
- 7.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
- 8.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- ④ 지주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(사임 포함)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.
- ⑤ 지주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주주의 참석률,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, 발행주식 총수, 의결권 행사 주식 수를 공시한다.
- ⑥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.
- 제 4 조(제정 및 변경 등) 이 규범은 지주회사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· 변경한다. 다만 법령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 · 이사회 의결사항의 단순 반영 및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2025. 3. 26. 본조 개정)

제 2 편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 장 이사회의 구성

- 제 5 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지주회사의 이사는 30인 이하로 한다.
 - ②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.
 - ③ 지주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 6 조(이사회 의장)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며,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,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-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③ 의장이 사고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후 최초 이사회 개최시 임기만료로 의장이 없을 때 그 임시의장의 순위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2 장 이사의 자격요건

제 7 조(이사의 자격요건) ① 이사는 「금융사지배구조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,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. 다만, 직무정지, 업무집행정지(재임 또는

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- ②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, 지주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.
- ③ 「금융사지배구조법」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이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, 업무경험,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. (2024. 10. 24. 본항 신설)
- ④ 사외이사는 「금융사지배구조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.
- ⑤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1.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, 경제, 경영, 회계 및 법률,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(2024. 10. 24. 본호 개정)
- 2.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
- 3.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
- 4.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

제 3 장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 · 책임

- 제 8 조(이사회의 권한과 책임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「이사회규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1.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「정관」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4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 - 5.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•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6.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7. 대주주·임원 등과 지주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
 - 8. 주주총회, 경영일반, 자회사 관리, 중요계약, 조직 및 임원,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과 기타사항에 관하여 「이사회규정」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
 - 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- 1.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
 - 2.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
 - 3.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 9 조(이사회 권한의 위임)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

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- 제 10 조(이사의 권한과 책임)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,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이사는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지주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③ 이사는 지주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"감사위원회"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지주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⑤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주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.
 - ⑥ 지주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.
 - ①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, 직계혈족, 배우자의 직계혈족(이하 이 항에서 "사외이사등"이라 한다)이수탁자·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.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(이하 "비영리법인등"이라 한다)이 지주회사(계열회사 및 지주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부터 기부금(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지주회사가 회원.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. 출연금 등은 제외한다. 이 항에서 "기부금등"이라 한다)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다만,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.
 - 1. 사외이사가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
 - 2.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·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·임직원이 된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

제 4 장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
제 11 조(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)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-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
- 1.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.
- 2.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- 3. 사외이사는 지주회사에서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.
- ③ 지주회사는 적정 이사회 규모 유지,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적정한 수의 사외이사 선임과 퇴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 12 조(이사의 퇴임) ① 이사가 임기의 만료 전 사임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지주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

- 제 13 조(이사회의 소집절차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.
 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- ③ 회장,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,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의장이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회장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 14 조(이사회 의결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정관의 변경,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 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 그러나,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 6 장 이사회등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 15 조(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) 지주회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 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

- 제 16 조(위원회) ① 이 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- 2. 회장후보추천위원회 (2018. 3. 23. 본호 개정)
 - 3.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
 - 4.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(2018. 3. 23. 본호 개정)
 - 5. 감사위원회

- 6. 리스크관리위원회
- 7. 평가보상위원회
- 8. 내부통제위원회 (2025, 3, 26, 본호 신설)
- 9. ESG 위원회 (2020. 3. 20. 본호 신설)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제 17 조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)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 (2018. 2. 8. 본항 개정)
 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 (2018. 2. 8. 본항 개정)
 -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.
 - 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⑥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 18 조(회장후보추천위원회)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④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, 경영승계 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 - 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[2018. 3. 23. 본조 개정]

- 제 19 조(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) 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 - ③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감사위원 선임시까지로 한다.
 - ④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한다.
- **제 20 조(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)** ①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 및 사외이사 아닌 이사 1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.
 - ②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④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 - 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[2018.03.23 본조 개정]

- 제 21 조(감사위원회) ① 지주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 - ②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 -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 인 이상은 「금융사지배구조법」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. (2025. 3. 26. 본항 개정)
 - ⑤ 제4항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. (2025, 3, 26, 본항 신설)
 - 1.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- 2.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법학, 재무,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(2025. 3. 26. 본호 개정)
 - 3. 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, 내부통제, 감사,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4.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 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, 경영, 법률,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5.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
 -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⑧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 - 1.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
 - 2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
 - 3.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
 - 4. 관계서류, 장부,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
 - 5. 금고, 장부,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
 - 6. 감사부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
 - 7. 자회사 검사조직의 활용 등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
 - ⑨ 감사위원회로부터 제8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(2025. 3.26. 본항 개정)
 - ⑩ 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 22 조(리스크관리위원회)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 수가

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리스크관리위원장은 리스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위원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리스크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④ 리스크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「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1.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
- 2.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
- 3.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
- 4. 관련 법령에 따른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
- 5.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⑥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 23 조(평가보상위원회) ① 위원회는 8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, 회계, 재무 또는 HR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. (2017. 3. 24. 본항 개정)
 - ②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평가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「평가보상위원회규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1.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
 - 2.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④ 평가보상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 24 조(내부통제위원회) ① 내부통제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 - ②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.
 -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「내부통제 위원회규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1.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
 - 2.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 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
 - 3. 「지배구조내부규범」의 마련 및 변경
 - 4. 「내부통제규정」의 제정 및 개정
 - 5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내부통제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[2025, 3, 26, 본조 신설]

- 제 25 조 (ESG위원회) ① ESG위원회는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② ESG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ESG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.
 - ④ ESG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「ESG위원회규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1. 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
 - 2. 연간 기부금운영한도 설정
 - 3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⑤ ESG위원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(2020, 3, 20, 본조 신설)

제 4 편 임원에 관한 사항

제 1 장 임원의 자격요건

제 26 조(경영진의 자격요건) 경영진(사내이사를 제외한다)의 자격요건은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정지는 정직요구로 본다. (2024. 10. 24. 본조 개정)

제 2 장 임원의 권한 · 책임

- 제 27 조(경영진의 권한과 책임) ① 회장은 지주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,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주회사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경영진은 회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, 관할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, 「직무전결규정」상의 권한을 영위한다.

제 3 장 임원의 선임·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
- 제 28 조(회장) ① 회장은 "회장후보추천위원회"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(2018. 3. 23. 본항 개정)
 - 1. "회장후보추천위원회"는 후보자를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7 일전까지 이사회에 추천한다. (2018. 3. 23. 본호 개정)

- 2.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회장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한다.
- ② 회장의 임기는 제11조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.
- ③ 회장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는 제12조에서 정한 이사의 퇴임에 따른다.
- ④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회장의 선임·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「경영승계규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 29 조(경영진) ① 경영진(사내이사를 제외한다. 이하 본 조에서 같다)은 회장의 임용결정에 따라 직위별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통해 선임한다. 다만, 「금융사지배구조법」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.
 - ②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으며, 별도의 계약 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.
 - ③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을 때
 - 2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
 - 3. 「인사규정」상 직원의 당연면직 또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
 - 4. 지주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사유로 계속 임용의 필요성이 없을 때

제 4 장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

- 제 30 조(임원에 대한 교육제도) ① 지주회사는 신임 경영진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전략, 금융, 회계,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.
 - ② 지주회사는 경영진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 - ③ 지주회사는 경영진에 대하여 수시로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.
 - ④ 지주회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 31 조(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) 지주회사는 경영진 후보자군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"경영승계 프로그램"의 일환으로 운영하며,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및 재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 5 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

- 제 32 조(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등) ① 회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하며, 경영진(사내이사를 제외한다. 이하 본 조에서 같다)에 대한 성과평가는 회장이 평가 후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의를 한다.
 - ② 성과측정 지표로는 재무 성과지표 및 비재무 성과지표 등을 활용한다.
 - ③ 단기성과급 관련 평가 대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, 장기성과급 평가대상기간은 2년 이상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④ 성과평가 결과는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에 반영한다.
 - ⑤ 성과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「평가보상위원회규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- 제 33 조(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) ① 보수는 기본급, 단기성과급, 장기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성 한다. 다만, 사외이사에게는 단기성과급, 장기성과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② 보수의 지급방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「이사보수규정」, 「집행임원운영규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5 편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

제 1 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

- 제 34 조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)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승계 절차 및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은 「경영승계규정」및「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 (2018. 3. 23. 본조 개정)
- 제 35 조(비상상황 발생시 경영승계 절차) ① 회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임, 해임,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자격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 시, 이사회의장은 24시간 이내 즉각 이사회를 소집한다.
 - ② 이사회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이사회규정」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한다.
 - ③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.
 - ④ 이사회는 직무대행자 선임 후 「경영승계규정」및「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」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. (2018. 3. 23. 본항 개정)

제 2 장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

- 제 36 조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) ① 지주회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를 둔다. (2018. 3. 23. 본항 개정)
 -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·검증 업무
 - 2.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
 - 3.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

제 3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

제 37 조(최고경영자의 자격)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리더십 경험과 업무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추고, 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며, 장·단기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제 4 장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

제 38 조(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)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

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.

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, 「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」, 「경영승계규정」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여야 한다. [2018.03.23 본조 개정]

제 5 장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

- 제 39 조(최고경영자 관련 공시)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,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.
 - 1.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
 - 2.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
 - 3.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
 - 4.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
 - 5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
 - 6.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
 - 7.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[2018. 3. 23. 본조 개정]

제 6 장 책임경영체제 확립

제 40 조(책임경영체제 확립) 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인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